



문 의	대변인실	대 변 인 정연우 042-481-5027 행정사무관 이송윤 042-481-5272
	2017년 1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월 3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

- 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-
-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취소 신청 가능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지재산 제도 개선,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‘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·지원시책’을 3일 발표했다.

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▲지재산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▲중소·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▲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▲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,

①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

- (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)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⇒ 3년 이내로 단축,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('17. 3. 시행)
- (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)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('17. 3. 시행)

② 중소·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

- (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)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,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('17. 1. 시행)
- (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)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, 표준화 전략,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('17. 1. 시행)

③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

- (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)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,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%에서 10%로 확대 ('17. 1. 시행)
- (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)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, 등록, 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 ('17. 1. 시행)

④ 대국민 서비스 개선

- (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) 출원인이 특허로(www.patent.go.kr)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,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,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* 가능 ('17. 3. 시행예정)

* 종전에는 특허,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짐

- (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)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⇒ 11개 과목으로 확대 ('17. 3. 시행)

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“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”며 “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< 붙임 > 2017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(1~3)



2017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

1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		
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	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 * 현행: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	'17 3월 예정 특허심사제도과 042-481-5397
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	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 *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지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, 취소이유가 있으면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직권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비해 편리함	'17 3월 시행 특허심사제도과 042-481-5397 심판정책과 042-481-8444
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및 시기 확대	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, 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* 현행: (기간) 공지된 날부터 6개월 (시기)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	'17 9월 예정 디자인심사정책과 042-481-5766
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	무효심판 대상의 조기 확정을 위해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 가능 기간 + 1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* 종전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	'17 3월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-481-8444
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	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가능 *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	'17 3월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-481-8444
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	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(Dead Copy)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, 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*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(안)	'17 7월 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-481-5842
영업비밀 침해 민·형사상 책임 강화	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, 영업비밀 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*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(안)	'17 7월 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-481-5842
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	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, 거짓 표시의 죄,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* (제232조 위증죄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	'17 9월 예정 상표심사정책과 042-481-5377

2

중소·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



글로벌 IP 기업 선정 지원

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,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(IP)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
* 해외디자인 전략 수립, 특허기술 해외 3D 홍보 영상 제작 등
신규 지원 프로그램 및 해외출원 지원 확대

'17 1월 시행
지역산업재산과
042-481-8622

IP 디딤돌 프로그램 시행

전국 17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등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(IP) 중심의 창업 도모

'17 1월 시행
지역산업재산과
042-481-8660

IP 경영지원단 운영

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된 'IP 경영지원단' 운영

'17 1월 시행
지역산업재산과
042-481-8622

IP 나래 프로그램 시행

창업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7년 이내인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이 독점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

'17 3월 예정
지역산업재산과
042-481-8663

「글로벌 히트 365」 프로젝트 지원 확대

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(IP) 확보 전략 지원을 기존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(BM)에 대한 IP 전략까지 확대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창출팀
042-481-8184

표준특허 강화 (Step-up) 프로그램 시행

국제 표준화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확보하여 강소기업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·비용을 확대하여 지원
- 연구·개발 방향, 표준화 전략, 표준특허 전략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창출팀
042-481-8499

공공연의 기업주문형 특허기술 개발지원

중소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의 R&D 과정에서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, 관계부처 기술이전·사업화 사업까지 후속 연계하는 공공연의 기업주문형 특허기술 개발지원 제도(IP - Dream Lab 프로젝트) 시행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창출팀
042-481-8499

3

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



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

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,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%에서 10%로 확대
* 중견·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5% 적용
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개정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정책과
042-481-5175

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

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·등록·실시 보상금 등으로 확대
※ 소득세법 제12, 21조 개정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정책과
042-481-8180

무상이전 특허 부가세 면제

등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, 부가가치세 면제
*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유권해석

'17 1월 시행
산업재산정책과
042-481-5423

대국민 서비스 개선



헤이그 국제출원 특허고객번호 의무기재 폐지	헤이그 국제출원 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'특허고객번호 기재 의무'를 폐지하여 출원인 정보 변경이 있을 때 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	'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042-481-5209 디자인심사정책과 042-481-5766
헤이그 국제출원 대리인선임신고 효력서류 확대	출원인이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 하면 대리인 선임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(보정서, 의견서, 기간연장 제출서)를 서류제출서류까지 확대 * 서류제출서류: 우선권증명서류,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,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(사본), 국제단계설명서 번역문(사본),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	'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042-481-5209 디자인심사정책과 042-481-5766
PCT 국내단계 진입시 발명의 명문명칭 기재 요건 폐지	국내진입을 위해 출원인이 제출하는 '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명세서' 작성항목 중 '발명(고안)의 명문명칭' 기재 의무 폐지	'17 3월 예정 국제출원과 042-481-5194 디자인심사제도과 042-481-8243
상용워드 출원 범위 확대	개인출원인이 특허로(www.patent.go.kr)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, 별도 명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, MS워드 작성된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출원할 수 있는 상용워드 출원 범위를 특허, 실용신안에서 디자인까지 확대	'17 3월 예정 정보시스템과 042-481-5117
PCT 국제조사 결과 출원인 제공	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PCT 출원시, PCT 접수 기관은 출원서와 함께 선출원의 심사결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전송하고, 국제조사기관은 선출원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	'17 7월 예정 특허심사제도과 042-481-5741
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	지식재산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하여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과목 확대 운영 * '16년 5개 과목 → '17년 11개 과목	'17 3월 예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042-601-4311